2021년도

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제3차 신규과제 공모 안내

2021. 7.

보 건 복 지 부 국 립 암 센 터 암정복추진기획단

1.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한국형 암의 원인 및 기전을 규명하고, 암 예방·진단·치료법 개발 및 적용으로 국민의 보건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□ 사업 근거

- 암관리법 제9조(법률 제17472호)
-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(보건복지부 예규 제111호)

□ 공모과제 개요

○ 내역사업명: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

○ 프로그램명: 예방중심의 암 공중보건 연구

○ 연구주제 및 지원내용

구분	연구주제	지원 규모	선정 규모
자유 공모	① 암관리사업 개선 방안 연구	200백만원 이내/年, 총 2년 4개월(28개월)	2과제
	② 효과적인 암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개발	100백만원 이내/年, 총 2년 4개월(28개월)	3과제

- 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(RFP) 참조
- ※ 1차년도('21)는 연구개발기간(4개월)을 고려하여 연간 연구개발비의 1/2 이내 지원

2. 추진 일정 (※ 연구 시작일은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○ 2021. 7. 7. 과제 공모

○ 2021. 7. 30.~8. 5. 연구개발계획서 접수

○ 2021. 8월 초 과제평가

○ 2021. 8월 중순 기획단 심의 및 예비선정과제 공고

○ 2021. 8월 말최종선정과제 승인 및 수정계획서 접수

○ 2021. 9. 1. 협약체결 및 연구 착수

3. 신청요건

□ 연구개발기관 자격

- ○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제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
 - 국·공립 연구기관
 -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 -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 -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 -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 -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(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제3조(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)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"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.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" 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○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연구 등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

□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프로그램별 제안요청서(RFP)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
- 비정규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,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 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, 해당 연구기관의 임면권자가 발행한 '임용 확약서류'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 - ※ 연구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, 과제신청 전 반드시 사전문의 바람
-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바람

□ 과제구성 요건

- 제안요청서(RFP)를 참고하여 단독 또는 세부과제를 구성하되,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각각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(총괄 주관연구개발기관)의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제1세부 연구책임자를 겸해야 함(총괄 연구개발계획서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대표로 작성)
- 세부과제 하위에 다른 세부과제를 구성할 수 없음(위탁과제는 구성 가능)
 - ※ "위탁과제"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일부분(임상시험, 통계분석 등)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는 과제임

□ 신청 제한

-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
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에 따라,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
 - 다만, 동 시행령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※ 총괄과제의 경우 각 세부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
- 연구책임자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이미 수행 중인 연구자
 - 다만,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또는 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예외로 함

□ 중복성 검토

-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를 통해 확인하며, 연구책임자에게 중복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
 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에서 심의·판단함
 - ※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(타부처 포함)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(www.ntis.go.kr 로그인 → 과제참여·관리 → 유사과제 → 유사성검토)

4. 신청방법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

- (1단계) 사전등록 및 업데이트
 - ※ 연구자, 연구개발기관, 참여기업 등에 대한 정보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사전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, 이미 등록된 경우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
- (2단계) 전산입력 사항 입력
 - ※ 과제명, 세부과제구성, 요약문, 연구자 인적사항, 참여연구원, 참여기업, 연구비 등
- (3단계) 연구개발계획서/첨부서류 작성 및 파일 업로드 (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)
 ※ 신청완료 후 연구개발계획서 합본 PDF파일(전산입력+업로드 hwo파일)의 파본(오류) 여부 반드시 확인
- (4단계) (총괄)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공동인증서(舊공인인증서)를 활용한(전자인증)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
 - ※ 기관용 공동인증서는 범용인증서만 사용 가능(은행용 등 용도가 제한된 인증서는 사용 불가)
 - ※ 기관용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을 별도로 제출
- 전산입력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참조(www.htdream.kr(자료실→매뉴얼)
-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**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(총괄주관연구개발** 기관)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신청 접수를 진행
- □ 제출서류: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중 해당하는 서식(붙임 3 참조)
- □ 신청기한

구분		신청기한		
과제신청	연구책임자	2021. 7. 30.(금) ~ 8. 4.(수), 17:00		
	기관담당자	2021. 7. 30.(금) ~ 8. 5.(목), 17:00		

※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완료되므로,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야 함

□ 연구개발비 산정

- 신청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 준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, 2021.1.1.)에 따른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 비를 산정함
 - ※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, 제안요청서(RFP)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비용은 불인정
- 간접비는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제114조(간접비고시비율 산출)에 따라 계상하며, 총 연구개발비 내에 포함됨

□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%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
- 위탁정산수수료와 관련한 사항(수수료율 등)은 최종 선정 시 안내함

□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(기관부담연구개발비) 부담기준

항목	공기업·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
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	총 연구개발비 대비 50% 이상	총 연구개발비 대비 30% 이상	총 연구개발비 대비 25% 이상	
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	부담액의 15% 이상	부담액의 13% 이상	부담액의 10% 이상	
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목	가.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나. 연구기설·장비비다. 기술도입비·연구재료비			

- ※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처에 납부해야 함
-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중견·중소기업이 청년인력(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)을 1명 이상 신규채용 시,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
 -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금현금의 감액분에 미치기 못한 때에는 정산 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
 - ※ 다만,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세부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, "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(5억원당 1명)" 초과 채용 시 적용 (예: 5억원 과제 -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, 10억원 과제 - 3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)

5. 선정(평가) 절차 및 기준

□ 평가단계별 반영비율

(1차) 서면평가		(2차) 구두평가	\Box	종합평가
30%		70%		가·감점 별도 포함

□ 평가 절차

사전검토 (전문기관)

- O RFP 부합성, 중복신청 여부,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, 참여 제한 여부, 암맹위반, 과제구성요건 등 검토
 - 사전 검토 후 평가대상과제 결정



서면평가

(연구개발과제평가단)

- 사전검토 통과한 과제 해당
- 프로그램 내 연구주제별 성격에 따라 평가방법을 구분하여 실시
- O RFP 부합성, 연구목표의 적절성 및 연구내용의 우수성 등 평가
- 구두발표평가 대상과제 선별(선정예정 과제 수의 2~3배수 이내)
- 평가결과 70점(100점 만점) 미만 탈락



구두평가

(연구개발과제평가단)

- 서면평가 통과한 과제 해당
-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및 연구내용의 우수성 등 평가
 - 연구자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단 토론진행(화상평가 진행 예정)
- 평가결과 70점(100점 만점) 미만 탈락



종합평가

- O 기 수행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등에 대한 가·감점 반영
- 최종 지원 대상과제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내 연구주제별 종합점수를 토대로 선정
-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는 점수 및 세부과제 구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

□ 평가 기준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	
연구의 부합성	· 연구제안서(RFP)와의 부합성	20		
연구목표의 타당성	·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등	20		
연구계획의 우수성	· 연구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여부			
연구계획의 구구경	·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타당성	10		
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의 적절성	· 연구기간 및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절성,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	20		
기대효과 등	· 연구결과 활용 및 기대효과	20		

□ 가·감점 부여

- 최근 2년 이내에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경우, 기 수행과제의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
 - ※ 적용기준: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시업 관리규정 및 평가지침에 따름

□ 평가점수 산정

- 평가점수는 과제별로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되,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절사함
 - 다만,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
- 최종점수는 가중치를 적용한 각 평가단계별 평가점수 및 가감점을 합산하여 산정하고,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함
- 신규과제 선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,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평동점자 처리기준을 준용함

6. 기타 유의사항

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 및 관리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)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,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'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'를 작성·첨부하여야 함
 -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·장비가 3천만원 이상, 1억 미만인 경우는 '연구개발 과제 평가단'에서 심의하고, 1억 이상인 경우는 '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 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'에서 심의함

□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준수

- 인간과 인체유래물*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·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 이라 함) 을 준수하여야 함
- * (인체유래물)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·세포·혈액·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 부터 분리된 혈청, 염색체, DNA, RNA, 단백질 등(법 제2조 제11호)

-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(법 제3조)
-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(이하 "기관위원회"라 함 를 설치하여야 함(법 제10조)
- ※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연구기관, 병원 등 포함
- ※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경우,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(세부문의: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(http://irb.or.kr))
- 인간 대상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전 기관 위원회의 심의 및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 유래물 기증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(법 제15~16조, 제36~37조)
- 잔여배아 연구, 체세포복제배아 연구, 배아줄기세포주 연구, 유전자치료 및 검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(예: 배아연구기관등록증, 배아연구계획승인서, 유전자검사기관 ・유전자연구기관신고필증 등)
- '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', '기관생명윤리위원회'에서 정하는 사항 및 연구의 종류·대상·범위를 준수하여야 함

□ 임상연구정보 CRIS 등록

- 등록대상: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대상자를 직접 관찰하는 코호트 등의 관찰연구 및 중재연구(임상시험) 등 모든 종류의 임상연구
-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임상연구 성과정보의 내실화 및 국내 임상연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구축된 임상연구정보서비스 (CRIS, http://cris.nih.go.kr)에 지원과제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 정 보를 등록하여야 함
 - ※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CRIS 등록문의: 043-719-8662 / criskorea@korea.kr
- 성과보고 시 임상연구 성과는 CRIS 등록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

□ 예상 연구성과에 대한 계량적 명시

- 과제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 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달성 가능한 목 표치를 제시하여야 함
-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시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시점, 총 연구기간 종료시점까지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성과, 즉 논문게재, 특허 출원 및 등록, 사업화 등을 양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함

□ 연구책임자 평가위원 등록

○ 신규과제로 선정될 경우, 연구책임자는 평가위원 풀에 등록될 예정임

본 안내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기타 연구사업의 운영은 「2021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계획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」 및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등에 따라 추진함

- ※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htdream)에서 확인
- ☞ (국가법령정보센터) 홈페이지(www.law.go.kr) 접속 → 검색
- ☞ (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) 홈페이지(www.htdream.kr) 접속 → 자료실 → 관련 법규에서 확인

문의처

- 암정복추진기획단 사무국: TEL) 031-920-1083~5, FAX) 031-920-1089
- 홈페이지: http://ncc.ncc.re.kr, http://www.ncc.re.kr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htdream) https://www.htdream.kr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https://www.gaia.go.kr

붙임. 제안요청서(RFP)

2021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제3차 신규공모 제안요청서

제안요청서명 (내역사업명)	'예방중심의 암 공중보건 연구' (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)			보안과제 여부 (보안등급)		일반
공모유형	자유공모형				부납부기술료 부 대상여부	0
과제명	<i>※ 제안</i> -	요청서 내	용을 참고하여 구체적	인 연구	² 과제명 기술	
	연구주제		지원기간		연구비(연간)	선정예정 과제 수
지원규모 및	1. 암관리사업 개선방안 0 2. 효과적인 암정책 수립		2021. 9. 1. ~ 2023. 12. 31. 위한 (2년 4개월 이내)		200백만원 이내 100백만원 이내	2과제 3과제
	- 근거 개발 100억년년 이 1 0억년년 이 1 0억년 이 1 0억년년 이 1 0억년년 이 1 0억년년 이 1 0억년 이 1 0억년년 이 1 0억년 이 1 0억년년 이 1 0억년 이					
연구목표	o 공중보건 분야의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암 예방·진료·관리 중재법(Intervention) 개발 및 암관리 정책 대안 제시					
	ㅇ 연구목표 및 아래 세부 연구주제를 감안하여 관련 연구를 자유롭게 제안					
주요	연구주제 세부 연구주제					
· 연구개발 내용	암관리사업 개선방안 연구	·국가 차원의 암관리사업 개선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확보 연구				
ਮ ਾਠ	효과적인 암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개발	▶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근거 창출 연구▶ 암환자 진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에 기반한 진료 정책 개발				
	ㅇ 암조기 검진율 향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암발생을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음					
기대	ㅇ 암으로 인한 조기사망 감소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					
효과	ㅇ 전 국민이 암 진료・관리 서비스를 고루 받을 수 있어 형평성 제고					
	o 암 진단·치료 비용 감소 등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					
	ㅇ 연구 성과(최소 요구사항)					
	- 중재법 도출 등 연구자가 제시하는 성과지표 1건 이상 *(예시) 암예방·진단·치료·관리 분야의 새로운 중재법 또는 정책대안 등 제시					
특기 사항	- (논문) 과제책임자가 주 저자(교신,제1)로 SCIE학술지에 연구종료시까지 1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하며 암정복사업 사사 논문만 인정함 * 편수는 사사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반영하며 연구개시 6개월 이후 발표된 논문에 한				지 1편	
	ㅇ 기타 여그게바경과 및 의 자근(row data)는 이버에 고개하는 거유 의치으로 하					
	- 연구개발결과 및 원 자료(raw data)는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-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					